○○초 동아리 현장체험관련 학생안전사고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4가소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구상금
원 고	○○○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외 2
판결선고일	2014. 12. 19.	비 고	
사건개요	- ○○초 5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 ●●●은 2009.6.27 14:00경 동아리 현장체험학습으로 국립과학관 견학 중 휴식시간에 생태체험관에서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던 소외 ◍◍◍을 밀어 부상을 입혔음. 소외 ◍◍◍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○○병원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에 발생된 치료비 2,536,280원을 지급 - 이 사고는 학교장 등의 학생 보호·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학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인천광역시와 ●●●의 법정대리인 등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 제기		
주 문	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- 피고는 원고에게 금2,536,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11.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		
판결이유	-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(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)이 있는 경우에만 학생의 보호·감독의무의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,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, 장소, 가해자의 분별능력, 가해자의 성행,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,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. - 이 사건의 경우 ●●●이 ◍◍◍을 연못에 빠뜨리는 과정에서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◍◍◍이 이 사건 견학중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솔교사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점, ●●●과 ◍◍◍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,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특별히 친구를 괴롭혔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, 평소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왔던 점, 이 사건 견학 중 야외 체험학습 장소인 연못에서 여러 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있었고, 일반 관람객과 같이 넓은 공간에 있었던 점, ◍◍◍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고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솔교사가 ◍◍◍이 이 사건 상해를 입는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.		